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주민 송환문제와 국제법

이 규 창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1-09

I. 문제제기

지난 2월 설 연휴 기간에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내려온 북한 주민 31명의 송환문제를 두고 남북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 당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유의사에 따른 북한주민의 결정을 존중’해서 귀환의사를 밝힌 4명의 주민을 송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귀순의사를 밝힌 주민 4명의 가족을 데리고 나와 현장에서 4명의 귀순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남한에 남겠다는 주민들의 마음을 가족을 통해 되돌리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읽혀진다.

관련 국제규범을 봤을 때 자유의사에 따른 북한주민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지극히 당연하다. 왜냐하면 귀순의사를 밝힌 주민 4명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 당국은 4명의 주민들에게 북한 형법상의 조국반역죄를 적용하여 공개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주민들은 최소한 교화소 또는 노동단련대에 보내져 비인간적인 처우를 강요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주민들을 송환할 경우 북한 당국은 후계구도 안정화 및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귀순의사를 밝힌 주민들을 시범케이스로 삼을 가능성도 높다. 북한이 2009년 4월 이후 미상(未詳) 시기에 형법을 개정할 바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치범에 대한 처벌과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체제보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Ⅱ. 공개처형 당할 것을 알면서 송환하는 것은 생명권 침해

공개처형(사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귀순의사를 밝힌 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행위는 주민들의 생명권에 반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자유권규약’)을 비롯한 보편적 및 지역적 차원의 주요 국제인권문서들은 모든 사람이 생명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권리(supreme right)이며 본질적으로 중요한 권리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비록 우리 헌법은 생명권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정부는 인간의 존엄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생명권을 보장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판례에서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다. 북한 주민도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해석상 대한국민 국민이라는 점에서 생명권의 향유 주체가 됨은 당연하다.

세계인권선언이나 자유권규약이 사형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의 송환을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통보사건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이러한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1991년 치타트 응(Chitat Ng)이 캐나다를 상대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제출한 개인통보사건에서 미국은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통보인을 인도해 줄 것을 캐나다에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통보인은 캐나다가 자신을 미국에 인도하는 것은 자유권규약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자유권규약 당사국은 동 규약상의 약속들을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약속들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인도하고 그 결과로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외국인 인도는 자유권규약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 국제협약은 사형을 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인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000년 12월 7일 채택된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제19조 제2항은 어느 누구도 사형에 처하게 될 심각한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 또는 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가혹행위 당할 것을 알면서 송환하는 것은 고문방지협약 위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노동단련대 등 북한의 구금 및 교정시설에서는 고문, 구타 등의 비인도적인 가혹행위가 만연해 있다. 가혹행위는 부상과 질병으로 이어지고, 부상과 질병은 열악한 영양 및 위생상태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개인(a person)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되며, 고문 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권한 있는 당국은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다. 따라서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규정을 준수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1994년에 무툼보(Mutombo)가 스위스를 상대로 제출한 개인통보사건에서 이 규정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통보인은 자이레에서 시위와 불법집회에 참석하고 스위스에 불법 입국하였는데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고문을 받거나 또는 자신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진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한 후 통보인이 고문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 통보인의 추방 또는 송환은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1994년 칸(Khan)이 캐나다를 상대로 제출한 개인통보사건에서도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한 후 통보인이 고문을 당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실제적 근거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통보인을 추방하거나 송환하는 것은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위반된다고 하였다.